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2022.7.14.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차 NGO 보고서 작성 461개 단체

공권력 감시 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1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노동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해외주민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동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두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경남퀴어문화축제,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어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멍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튜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 이주민센터 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 집, 함께 하는 공동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정책대응모임(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

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위원회, 전쟁없는 세상,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114, 전국세입자협회, 나눔과 미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168개 단체),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단법인 동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목차>

I. 배경	7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7
B. 국가인권위원회	8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8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9
A. 코로나와 인권	9
5. 엄벌주의와 범죄화	9
6.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건강불평등	10
7. 위중증환자의 치료권 제한	10
8.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11
9. 코로나 시기의 집회의 자유	11
B. 평등과 비차별	12
1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2
11.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13
12. 인종차별	13
C.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14
13. 사형제	14
14. 고문방지	14
15.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16
D. 법의 집행과 법치	17
16. 군대 폭력과 불처벌 - 자살, 고문, 지연된 배상	17
17. 군대내 젠더 폭력 - 성폭력	19
18. 군대내 성평등 - LGBT+ 권리	20
19. 과거사청산	21
20. 일본군성노예제	21

E. 사생활에 관한 권리	23
21. 노동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23
22. DNA 수집	23
23. 인공지능 기술과 기본권 보장	24
24. 주민등록제도 개선	24
25. 통신의 비밀 보장	25
F.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25
26. 집회의 자유	25
27. 명예훼손, 모욕 형사처벌 제도	26
28. 온라인 정보 차단 제도	27
29.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28
30.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28
31. 양심적 병역거부	28
32. 국가보안법	30
33. 보안관찰법	30
G.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31
34.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1
35.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31
36. 좋은 일자리	32
37.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알권리	32
38. 기업과 인권	33
H.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33
39.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33
40. 건강보험	34
41. 공공병원	34
42. 노인돌봄 및 노인학대로부터의 보호	34

43. 노인빈곤과 공적연금	35
44. 상병수당	35
45. 주거권	35
I. 소수자	36
46. 장애인	36
47. 장애인 노동	37
48. 이주노동자	38
49. 이주구금	38
50. 인신매매	39
51. 난민과 난민신청자	40
52. 결혼이주여성	41
53. 이주민 건강권	41
J. 여성과 아동	42
54. 아동권리 이행 일반	42
55. 아동친화적 사법제도	43
56. 보편적 출생등록	43
57. 입양	44
58. 아동보호체계	44
59.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45
60.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45
61.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45
62. 성별임금격차 해소	46
63. 채용 성차별 근절	46
64.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47
65.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48
66. 미혼모의 권리	48
K. 발전권	49

67. 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과 인권	49
L. 기후위기	49
68. 기후위기와 인권	49

I. 배경

1.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8년 3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에게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A.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2.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강제실종협약(CED)이주노동자권리협약(CMW)은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가입 조약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또한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2nd OP-ICCPR),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CRPD),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3rd OP-CRC)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권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를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1년 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29호, 87호, 98호를 비준하였으나, 105호는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적 지위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이 증가하고 있으나¹⁾ 유엔의 권고를 국내에 널리 알리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으며, 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결과도 국내 상황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비준 국제조약 비준 및 남아있는 유보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고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B.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²⁾ 그러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3회나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을 지명 또는 선출 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참관은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 아님에도, 비공개 회의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는 회의록이 익명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모든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들의 실명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 국가인권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문 수는 총 3,185건이다. 1990년대에는 12건에 불과하던 판결 수가, 2000년대 705건으로 늘어나고, 2010년대에는 2,468건으로 급증하였다. 다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관련 판결이 3,124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중 3,065건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다. 이해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2020), p.94-96.

2)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1-12/SCA-Report-October-2021_E.pdf

GANHRI-SCA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단일독립선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과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³⁾

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4. 정부는 2007년부터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NAP에 대해서 수립과 이행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제3차 NAP의 경우에는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였다. 시민사회의 제안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에도, 이미 이행된 제3차 NAP에 대해서 정부는 최소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평가를 토대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NAP가 제대로 수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도적으로 NAP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정부부처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2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서 NAP를 포함한 인권정책을 다루는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까지(2022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NAP의 수립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NA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인권정책기본법이 제4차 NAP 수립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이 제4차 NAP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II.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A. 코로나와 인권

5. 엄벌주의와 범죄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위협에 비례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⁴⁾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는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만 집중하여 인권과 방역을 대립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정부는 자가격리나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하였고, 이는 위반자들에 대한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실형 선고 등 범죄화로 이어졌다.⁵⁾ 또한 이는 감염병 환자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3) See ANNI(The Asian NGO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2020 report for detailed criticism of the NHRCK. <https://www.forum-asia.org/?p=36231&nhrri=1>

4) UN OHCHR, COVID-19 Guidance.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5) 이탄희 의원 / 경찰청

낙인을 조성했다. 정부는 무제한적인 기본권 제한과 단순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소 등 질병의 범죄화 기조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건강불평등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소수자 배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였다.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아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집단감염되었으며⁶⁾ 장애인을 고려한 의료시설의 접근권이 나 돌봄이 지원되지 않았다.⁷⁾ 홈리스 등 부적절한 주거에 살거나 거리노숙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⁸⁾ 홈리스들은 감염이 된 후에도 집단시설에서 격리나 치료하도록 했으며, 음식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매번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차별적 조치를 했다.⁹⁾ 홈리스나 이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코로나 감염치료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려도 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권이 낮아졌다.¹⁰⁾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주민이나 홈리스 등을 배제하였다.¹¹⁾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이는 조금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과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홈리스들은 초기 마스크 구매 5부제에서 배제되었고,¹²⁾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접근이 제한되는 등 방역 전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관련 지침이 다를 뿐 아니라 백신 접종, 선별진료소 관리 등 모든 절차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겪어야 했다. 또한 경기도,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21.4.30. 기준)

(단위:명)

구분	합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합계	5,734	1,463	3,877	251	143	
종결	송치	3,605 (구속 17)	1,180 (구속 9)	2,230	137 (구속 6)	58 (구속 2)
	불송치 등	704	98	439	87	80
수사 중	1,425	185	1,208	27	5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검찰청)

총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비율	구약식	구약식 비율	
5,606	2,744	13	1,185	43.7%	1,546	56.3%	2,862

- 6) Korea's institutionalization of disabled people during the COVID-19 era (Part 1), Hankyoreh, Dec. 3, 2020,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72680.html
-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9527.html> 한겨레, 2022.3.4
- 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4834&ref=A> KBS, 2021.12.9.
- 9) 인권위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412>
- 10) 노숙인 인권 권고 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986&menuid=001004002001
-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857.html 한겨레, 2021.8.31.
- 12) <https://www.mbn.co.kr/news/society/4145671> MBN, 홈리스재난지원금 지원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도 외국인만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차별적 조치가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사회적 권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주민이나 홈리스도 재난지원금이나 검사 및 예방 접종 및 치료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은 세워져야 한다. 감염병 위기 시기 미등록이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한시적 체류허가제 도입,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배제와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법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7. 위중증환자의 치료권 제한

초기 코로나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지원하던 방침은 2021년 말 부터 최장 20일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받았다.¹³⁾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후유증을 겪거나 건강상태가 여전히 위중함에도 감염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은 중단되었고, 병원을 바꾸라는 전원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을 포함하여 감염부터 회복까지 차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원명령할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한다.

8.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방역 정책은 개인의 과거 동선 추적을 통한 접촉자 파악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역, CCTV 영상정보,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설방문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동선을 자동으로 파악하기 위해 처리된다. 그러나 정부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 및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규율하는 근거 법률도 없이¹⁴⁾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의 개념 역시 모호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의 특정 기지국 주변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¹⁵⁾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을

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712530000429?did=NA> 한국일보, 3.7.

14)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2021),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2021.10
<https://idr.jinb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1/11/Epidemic-Intelligence-Support-System-and-Automated-Processing-of-Personal-Data-in-South-Korea.pdf>

15)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2020), COVID-19 and the Right to Privacy :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2020.11.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12/Covid_19_and_the_right_to_Privacy_an_analysis_of_South_Korean_Experiences.pdf

위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는 진정한 동의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식당을 포함한 시설 방문 기록의 수집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비례성을 위반한 과도한 통제 정책이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편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중심설계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감염병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9. 코로나 시기의 집회의 자유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회금지의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지방정부는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기한의 제한 없이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2월 2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종로 일대 등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년 8월 21일부터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거리두기가 잠시 1단계로 내려갔던 10~11월 약 40여일을 제외하고는 2021년 7월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2021년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고시를 통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를 금지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집회 금지통고건수의 비율은 11%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0.003%와 0.00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¹⁶⁾ 집회가 제한·금지되는 동안 대중교통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선거 캠페인이나 백화점 개점과 같은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도 했다. 집회와 코로나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유독 집회만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방법을 제공하기보다는 제한과 금지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도 집회, 시위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 및 금지해야 할 경우 기한을 한정해야 하며, 집회금지의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¹⁷⁾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B. 평등과 비차별

1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6) 프레시안, '집회 무차별 금지 반환법적...전광훈 목사 집회도 허용해야' (게시일 2021.08.12., 검색일 2022.05.24.)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00,000명이 서명한 국민동의청원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¹⁸⁾ 그럼에도 국회는 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여 두 활동가가 46일 간의 단식투쟁을 하였음에도 국회는 한 차례 공청회를 가진 것 외에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¹⁹⁾ **정부와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4건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확한 언어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1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권리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의 존재,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적 접촉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징집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 조항은 군대에 가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2022년 4월 대법원은 병영 밖에서 성적 접촉 행위를 한 두 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병영 내에서의 동성 간 성적 접촉 행위는 여전히 처벌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 전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2021년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축제참가자들이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거부했다. 나아가 법적 소송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단체의 목적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5%가 의료인, 상담사, 종교인으로부터 ‘전환치료 목적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환치료’ 관행도 여전히 심각하다. 그럼에도 2022년 5월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혼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다. 또한 이성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 주거정책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성부부는 그렇지 못하다. 2021년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률이 아닌 대법원예규에 의해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성기수술을 받았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 가혹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고, 성소수자 개인과 단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소위 ‘전환치료’에 해당하는 상담 및 치료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18) Human Rights Watc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should act swiftly to enac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11 November 2021.
<https://www.hrw.org/news/2021/11/11/national-assembly-south-korea-should-act-swiftly-enact-anti-discrimination>

19) Hankyoreh, “This is not the end”: S. Korean activist ends 46-day hunger strike for anti-discrimination act”, 27 May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44700.html

동성부부가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법 개정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 외과수술,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 가혹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인종차별

한국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비자)는 2020년 현재 236,950명이다.²⁰⁾ 이들은 최장 총 9년 8개월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²¹⁾ 그러나 이들은 가족동반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친밀감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미혼인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한정된 생활 반경 등으로 인해 교제 또는 결혼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특례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재외동포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가족 동반을 허락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인종차별 정책이다.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무슬림사원 건립 반대운동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시 북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중이던 무슬림사원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러한 북구청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그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구청은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여전히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²²⁾ 정부는 UN의 각 위원회에서 계속되어 온 권고를 수용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C.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13. 사형제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24년 6개월 넘게 사형집행이 없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총 59명의 사형수가 있고 이중 법무부 교정시설에 55명,²³⁾ 군 교정시설에 4명²⁴⁾이 수용되어 있다. 5년전에는 사형수가 61명이었으나 그동안 2명이 사망하였다. 2020년 11월, 제75차 유엔 총회 3위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찬성 표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1월, 사형제도 존재 여부가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

20) 남성 216,903명, 여성 20,047명

21) 원칙적으로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고, 재고용될 경우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22) New York Times, “How ‘Multiculturalism became a Bad Word in South Korea” (게시일: 2022. 3. 1. , 검색일: 2022. 7. 6.)

<https://www.nytimes.com/2022/03/01/world/asia/south-korea-diversity-muslims.html>

Korea Times. “Mosque construction triggers standoff in Daegu” (게시일:2022. 5. 3., 검색일: 2022. 7. 6.)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2/05/177_328375.html

23) 접수번호 8905799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법무부, 2022/03/16

24) 접수번호 8905813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국방부, 2022/02/28

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를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고, 2022년 7월 14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는 사형폐지특별법이 9번째로 발의되었다. 정부는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모든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해야 한다. 국회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엔 자유권규약 제 2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14. 고문방지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방문조사 등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적·물적·인적자원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미인가 보호시설 등 일부 시설들이 조사의 범위에 배제되어 있다는 점, 정기적 조사가 담보되지 않다는 점 등 국가예방기구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²⁵⁾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한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완전히 범죄로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²⁶⁾ 또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에 대해서 민사 및 형사상의 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 상 피해자들의 배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²⁷⁾ 정부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범죄로서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효의 배제 및 심리지원 도입 등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수용시설에서의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용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따른 1인당 최저면적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²⁸⁾ 최근 한 법원이 국가배상의 기준이 되는 1인당 최저면적을 1.4㎡로 보아 논란이 있었다.²⁹⁾ 정

25) Article 2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defines “confinement or caring facility” as “(a) Prison, juvenile prison, detention center and its branch, protective custody offic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juvenile reformatory, and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b) Detention cell and facility where a judicial police officer investigates, detains, and accommodates persons in order to perform his/her duties;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including its branch office and detention facility for detainees pending trial); Foreigner detention center; Facility for caring for many persons (referring to a facility for protecting and accommodating many persons, which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acilities that stipulates in the Presidential Decree are approved protection facilities.

26)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30 May 2017, CAT/C/KOR/CO/3-5, para. 7-8.

27)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provides measures related to psychological damages. However, torture and CIDT are not fully crimes in the Republic of Korea, most of victims cannot receive the support from the Act.

28) 2016년~2020년 평균 수용율은 115.8%에 이르고, 2021년 4월 30일 기준 대도시 16개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율은 116.4%이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수용율이 120%를 초과하는 기관이 2021년 5월 7일 기준 22곳에 달했다. 교정시설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랐을 때 위 수용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29) The Law Times, the delay of judgment.. ‘adequate living space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per inmate’, 24 February 2022, (Korean)

부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과밀수용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한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를 야기할 수 있는 발목보호장비, 보호침대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보호장비의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장비의 사용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남용이 우려된다.³⁰⁾³¹⁾³²⁾ 부산구치소에서 2020. 5. 한 수용자가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에 사망하기도 했다. 법률은 금치(독방구금)의 기준을 30일³³⁾ 이내(최대 45일까지 가중 가능, 연속 부과 가능³⁴⁾)로 하고 있는데, 15일 이상의 금치가 만연하다.³⁵⁾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95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다.³⁶⁾ 정부는 금치징벌의 최장 기간을 15일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정부는 현재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등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고 있다.³⁷⁾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심신장애인이고³⁸⁾, 세부적인 장애 유형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단 한 곳 뿐이고 병실의 93.8%가 7-8인실이며 지속적으로 과밀수용의 문제가 지적되었다.³⁹⁾ 나아가 의료진과 피치료감호자의 비율은 1대 100 이상에 이르러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670>

30)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97 (Use of Protective Equipment) (1) Where an inm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y correctional officer may use protective equipment

31)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98 (Types of Protective Equipment and Requirements for Use) Protective Equipment) (1) The types of protective equipment shall be as follows: 1. Handcuffs; 2. Head protective equipment; 3. Ankle protective equipment; 4. Braces; 5. Protective chairs; 6. Protective beds; 7. Protective clothes; 8. Policeman's ropes.

32) Council of the Correction Reform in The Ministry of Justice, Press Release: The Reform Measures for Overcrowding in the Correction Facilities to be taken - The Announcement of the Second Recommendation of Council of the Correction Reform in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n)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437/548682/artclView.do>

33)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108 14. Forfeiture of rights for up to 30 days

34)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rticle 109 (2) If an inma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up to 1/2 of the period of disciplinary action prescribed in subparagraphs 2 through 14 of Article 108 may be increased.

35)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5일 이상의 금치가 전체 징벌자 대비 약 41~60%에 달했다.

3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ublic Announcement of Opinion on Fif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pursuant to the optional reporting procedure, due in 2020, 6 July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4732&filename=f3ae08fa8340ccbb776f039617f20b79.pdf>

37) Se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38) As of 2021, 851 out of 926 persons are persons with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중요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3)

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⁴⁰⁾ 정부는 치료감호소에서의 과밀수용과 의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장 15년-살인한 사람은 연장기간 포함 최장 21년-의 장기간의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⁴¹⁾ 그 결과 5년 이상 치료감호를 집행 받은 사람이 32.8%(2020년 기준)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기보다 긴 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고 있다.⁴²⁾ 최근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1년 4개월 동안 수용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⁴³⁾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격리 또는 결박 등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⁴⁴⁾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다는 점⁴⁵⁾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장기수용-특히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수용-및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사회 내 치료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 경향신문, “치료감호소 10곳 중 9곳이 7~8인실 “과밀 심각”, 2017,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710160955011>

40) 한국일보, “치료감호소 의사 “하루 환자 200명까지... 약도 기억 안 나”, 20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619030005603>

41)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16 (2)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applicable periods: 1.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1 and 3: 15 years (3) If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fter being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committing a homicide defined in subparagraph 3-2 of Article 2 of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micide”) is deemed likely to repeat such crime and require continuous medical treatment, the court may,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based o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head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decide to extend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by up to two years for an extension on up to three occasions.

42) 손외철·함혜현·박은영, 치료감호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2021년도 법무부 용역연구과제, 2022, 20쪽

43) 경향신문,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 ‘지적장애인’이라서”, 202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1210600075>

44)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25-3(Prohibition on Isolation and Other Restrictions) (1)The head of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shall not physically restrict any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r candidate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tc.”), such as isolating or binding him/her, unless he/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Provided, That direct physical restrictions, such as binding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tc., shall be permitted only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1. Where the relevant person is highly likely to put himself/herself or other persons in danger and it is deemed significantly impracticable to avoid such danger with any method other than physical restriction: 2. Where the relevant person commits a serious unlawful act or disciplinary offense: 3. Where the relevant person commits any other serious act of disrupting order at the facility.

45)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47 (Sentenc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The qualification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f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performanc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erminates or such person is exempted from such performance: 2. Rights to vote and rights to be elected as provided for in public law

D. 법의 집행과 법치

16. 군대 폭력과 불처벌 - 자살, 고문, 지연된 배상

2017년 이래 대한민국은 19~20세 남성 83%가 현역 복무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⁴⁶⁾ 해마다 약 22만 명이 입대하여 18개월내지 3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약 4천 명이 심리적 문제로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는데 부상에 의한 전역자의 2배 가량이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⁴⁷⁾ 이는 심각한 생명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2021년에만 83건의 자살 등).⁴⁸⁾ 군대 폭력 및 사망 사건은 온전히 수사되지 않는다. 2022. 6. 한국 법원은 2014년 한달간 이어진 구타로 사망한 윤일병의⁴⁹⁾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사경찰이 초기에 사망원인을 은폐했음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당시 지휘관 및 수사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군 유족들은 2020년대에도 의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⁵⁰⁾ 2019년 죽음의 군 직무 정하는 순직심사 대기자가 39,436명이었다. 여전히 자살의 핵심 원인인 폭력 사건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기소율 50%).⁵¹⁾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은 코로나19 중이던 2020년 폭증했다.⁵²⁾ 그렇지만 군사법체계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군판사, 군검사, 국선변호인은 모두 군

46) 통계청(2022). 「병역판정검사현황」.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 에 따르면 신체검사서에서 현역판정을 받는 비율은 2015년 87%(304,500명), 2019년 815(263,300), 2020년 81%(282,200)를 기록하고 했다. 「현역병 입영현황」.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7 에 따르면 해마다 입대하는 인원은 2015년 249,477명이었고, 2019년 224,062명, 2020년 236,146명이었다.

47) 각 박성준 의원실 및 황희 의원실 (2020). <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구분	2016	2017	2018	2019	Sep 2020	계
현역복무부적합 (심리적 사유)	3,909	4,280	4,789	4,922	3,499	21,399
구분 (2015-2020.9)	병	부사관	장교	사회복무	기타보충역	계
의병전역	9,930	424	235	2,055*	68*	12,712

*해당 인원은 현역이 아님;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

48) 통계청(2022). 「군 사망사고 현황」.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이렇듯 군대 사망자의 80%가량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살 사망자	79	67	57	54	52	56	62	42	83
총 사망자	117	101	93	81	76	86	86	55	103

49) <https://www.nytimes.com/2014/08/07/world/asia/outrage-builds-in-south-korea-over-military-abuse.html>

<https://edition.cnn.com/2014/09/03/world/asia/south-korea-military-bullying/index.html>
(Warning Blunt Image Contained)

50) 여러 군 사망 사건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며 2018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3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2021년 1월부터 1,756건을 접수받았고, 601건을 처리했으며 1,185건이 계류중이었다(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1.1.28.자 보도자료).

51) 접수번호 7699251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국방부, 2021/04/19

연도	전체 건수	불기소율	실형	집행·선고유예	벌금	무죄·기각
2017	1,240	65%	-	47	213	1
2018	983	66%	1	25	164	3
2019	893	58%	-	26	143	1
2020	1,010	50%	4	14	118	1

52) 접수번호 7699243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국방부, 2021/05/07

법무관이라는 동일한 집단에서 순환보직되며 군사경찰과 마찬가지로 군 지휘관의 부하이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군 외부 감시기관인 ‘군인권보호관’ 이 도입되지만 겸직 직위일 뿐이고,⁵³⁾ 따라서 조직, 예산, 인력의 자율성이 없다. 더구나 부대방문시에는 사전에 군 지휘관에게 통지해야 하는데,⁵⁴⁾ 이마저도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⁵⁵⁾ 유엔 조약기구 또한 이러한 고문, 가혹행위, 자살에 주목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배상을 권고했으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 군법무관과 감시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권고했다.⁵⁶⁾ 정부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실효적 부대 방문 및 자료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따라⁵⁷⁾ 군사법체계는 민간 법원·경찰로, 군법무관도 법무부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 폭력과 사망 사건을, 심리부검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적절히 처벌하고, 국제기준에

구타·가혹행위	2017	2018	2019	2020	계
형사사건	1,240	983	893	1,010	4,126
징계사건	13,391	12,127	8,737	9,255	43,510

53)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54)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5)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56) CCPR/C/KOR/CO/4/2015, para. 31: The State party should conduc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allegations of abuse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at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ried and punished. Merely suspending perpetrators of violent crimes from their duties or dismissing them from the army is not an adequate response. Complaints should be treated confidentially and victims and witnesses should be protected against reprisals. CAT/C/KOR/CO/3-5, para. 36 (a) Reinforce measures to prohibit and eliminate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sexual,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the military and ensure the prompt, impartial and thorough investigation of all allegations of abuse and deaths in the military in order to demonstrate zero tolerance for ill-treatment and torture of military personnel; (b) Establish the office of military ombudsman as an independent entity to monitor military units and conduct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abuse and violence in the military; (c) Promptly investigate all cases of death in the military and establish the liability of direct perpetrators and those in the chain of command, prosecute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with penalti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gravity of the act committed and make the results of such investigations public; (d) Ensure the independence of military judicial officers engag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 Provide redress and rehabilitation to victims,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med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3 (2012)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57) See E/CN.4/2006/58 (2006), “DRAFT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MILITARY TRIBUNALS”: CCPR/C/GC/32, inter alia, paras. 19: … requirement of independence refers, in particular, to the procedure and qualifications for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guarantees relating to their security of tenure until a mandatory retirement age or the expiry of their term of office, where such exist, the conditions governing promotion, transfer, suspension and cessation of their functions, and the actu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where the latter is able to control or direct the former is in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n independent tribunal; 22.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pply to all courts and tribunals within the scope of that article whether ordinary or specialized, civilian or military …

따라58) 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의학적, 심리적, 법적 지원과 배상을 제공하고, 수사 등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17. 군대내 젠더 폭력 - 성폭력

최근 한국 군은 열악한 성인지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인의 성폭력 형사사건은 2016년 826건, 2017년 979건, 2018년 898건, 2019년 887건 등 증가 추이다.⁵⁹⁾ 약 50%의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⁶⁰⁾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육군에서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군인 중 53%가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했다. 국방부의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런 불처벌은 피해 신고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⁶¹⁾ 더욱이 피해자는 역고소를 당하거나 홀로 방치될 수 있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고, 명예훼손, 특히 군의 경우, 상관모욕 등으로 고소한다. 그 사이 2021년에만 3명의 여군이 자살했다.⁶²⁾ 이 사건들은 2013년과 2017년에 있었던 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 초기 은폐되었다.⁶³⁾ UN CEDAW는 2018년 군 성폭력 가해자 엄벌과 신고자 비밀보장을 권고했다.⁶⁴⁾ 한편, 한국은 여군이 전체의 8%에 불과하고, 여군 화장실이나 위생용품이 부족하다.⁶⁵⁾ 또, 고위장교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의 여생도 정원은 전체 10%만 허용된다. 참고로 경찰대의 경우 2021년도 합격생의 22%가 여성이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성폭력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복귀를 막기 위해 엄격한 행정징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하라.

58) UN 총회 결의안 40/34와 60/147;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9/65

59) 접수번호 7699333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내역, 국방부, 2021/05/07

60) 김민기 의원실 (2021)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1,874명의 성범죄가 군인에 의해 발생했다. 52.13%는 불기소되었다. 오직 4.86%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성범죄의 70.97%는 강제추행이고, 11.9%는 디지털 성범죄고, 7.63%는 강간이다. 다음은 5년간 처벌결과이다.

계급	기소유예	벌금	선고·집행유예	실형	기타
영관(장군)	23	13 (1Gen*)	26 (2Gen*)	9 (1Gen*)	1
위관	59	37	46	13	3
부사관	226	110	135	21	5
군무원	12	4	8	0	0
병사	657	177	241	48	0

*Gen: 장군

61) 오직 32.7%만이 성폭력을 경험/인지한 후 신고하였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 중 44%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미신고 사유로 꼽았다.

62) Choe. 2021. “‘The Only Exit’: Where Soldiers Are Dying After Sexual Assaults”. The New York Times. (Oct. 15).
<https://www.nytimes.com/2021/10/15/world/asia/south-korea-military-sexual-assault-suicide.html>

63)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31212000830> (2013년 사건);
<https://news.yahoo.com/korea-rape-victim-navy-officer-commits-suicide-100827385.html> (2017년 사건)

64) See CEDAW/C/KOR/CO/8, para. 23: ... (f) Ensure stricter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n public institutions, ... and the military, take steps against the reinstatement of perpetrators in their professional functions and provide for stricter confidentiality to facilitate reporting and counselling; ...

6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7진정7969 (2018. 1. 24.)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18. 군대내 성평등 - LGBT+ 권리

한국의 LGBT 군인들은 침묵해야 한다.⁶⁶⁾ 육군은 2020년 2월 트랜스젠더 군인이 성확정수술로 남성 성기가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한 바 있다. 여러 UN 인권전문가가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⁶⁷⁾ 민간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한국 군은 트랜스젠더의 공개 군 복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한편, 2017년 육군은 20여 명의 게이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추행’ 혐의로 수사하였는데,⁶⁸⁾이중 4명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단지 5명에 대해서만 최근 불법수사와 사생활을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⁶⁹⁾ 단, 여전히 추행죄는 존재하고,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소극적이다. 그 사이 2018년 말에도 해군이 육군과 같은 불법수사를 통해 3명을 ‘추행죄’로 수사했다. 한편, 2019년 한 육군 중대장은 이병에게 ‘전환치료’를 제안하고 그 가족에게 ‘아웃팅’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2018년, 해군에서 한 레즈비언 여군을 강간한 2명의 지휘관들이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도 하였다.⁷⁰⁾ 정부는 국제기준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준하여 민간 전문가와의 협치를 통해 다양성과 LGBT 포용 정책 및 교육을 모든 정규 군사학교의 공식 의무 교육과정으로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LGBT 군인의 공개복무에 관한 정책을 입법하고,⁷¹⁾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게 보상하라.

19. 과거사청산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수십 년에 걸쳐 공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⁷²⁾ 국정원, 보안사, 경찰 등 국가의 정보기구들이 과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66) <https://edition.cnn.com/2019/07/10/asia/south-korea-military-lgbt-intl-hnk/index.html>

67) See AL KOR 4/2020. 다만, 이 처분은 피해자가 2020. 2. 사망한 후, 피해자의 성을 여성으로 인정하고 남성의 신체검사 기준 적용의 부당함을 인정한 대전지방법원에 의해 2021. 10. 취소되었다. <https://apnews.com/article/seoul-south-korea-fddf72e3c525e0ef9ea87612298e2ea2>

68)

www.theguardian.com/world/2022/apr/22/south-koreas-highest-court-overturns-military-c-onvictions-of-two-gay-soldiers

69)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181120000687> (고등군사법원);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37221.html (대법원)

71) See A/HRC/43/52, para. 37 (p) Design and implement a protocol for military service of LGBTQI individuals that recognises their gender identities, enables military service, and protects from discrimination and violence (UN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9)

72)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성노예, 강제노동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동원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제 주 4-3,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이 이어졌다.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을 악용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일반 시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되기도 했다. 독재정권 하에 만들어진 ‘형제복지원’과 같은 불법구금시설은 공권력과 협력하여 대규모의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은 다양한 과거청산 작업의 첫발을 내딛게 했다. 무엇보다도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목적으로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어 5년간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제한된 조사기간, 정권교체 등의 제약으로 무수한 미완의 과제들을 남긴 채 문을 닫았다. 그 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2020년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되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도 수십 년 전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보기구의 개혁을 포함해 국가폭력 관련 자료를 관련 기구에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조치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적용 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인권 구제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 일본군성노예제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이 넘는 문제해결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부인, 한국 정부의 무책임,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공격 속에서 또다시 상처 입고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는 일본 극우세력과 연결된 한국의 역사부정세력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활동가들과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⁷³⁾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역사부정세력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자행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방임하고 있다.⁷⁴⁾ 정부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2015 한일합의’ 복권을 토대로 역사적 진실을 경제·안보 협력과 맞바꾸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⁷⁵⁾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부장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한일합의(‘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반하는 정치적 합의로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 헌법재판소도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는 판결⁷⁶⁾을

73) 2019년 말부터 한국에서도 수요시위 옆에서 일본 극우세력과 연결된 한국의 역사부정세력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활동가들과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익명을 원하는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의 증언을 왜곡하는 피켓을 들거나 피해자의 사진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그녀의 말을 흉내 내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소셜 미디어에 중계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모욕하고, 욕설, 성희롱, 신체적 괴롭힘 등을 일삼으며 수요시위 장소에서 반대 시위를 개최하여 확장기로 비명소리와 총소리 등을 재생하며 스피커를 수요시위를 향해 돌리는 등 계획적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여성혐오적인 욕설과 피해자들의 증언 왜곡이 자행되는 수요시위 한복판에서, 고령의 나이로 어렵게 참가한 생존자 이옥선(2021년 3월 24일, 1484차 수요시위, https://youtu.be/T4_OEdTVyCQ)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사죄받는 것은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Yonhap, “Sexual slavery victim, supporters sue right-wing activists for defamation,” 16 March 2022, <https://en.yna.co.kr/view/AEN20220316008700315>

74) Hankyoreh, "'Comfort women' protest obstructed by far right despite call for safeguarding, 20 January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28191.html

75)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2015 한일합의’의 주역이 포함된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였다. 한국 외교부 장관 박진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20일, ‘2015 한일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였다고 발언했으며,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었다고 반응했다.

내린 바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⁷⁷⁾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로운 수요시위를 보장하고, 수요시위에서 자행되는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발언,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정치적 합의였던 ‘2015 한일합의’ 복권 시도를 중단하고, 과정과 절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 사생활에 관한 권리

21. 노동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은밀하고 포괄적인 노동감시가 가능해졌지만, 부당한 노동감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나 법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2021년 실태조사⁷⁸⁾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디지털 감시기술의 사용이 2013년에 비하여 증가추세에 있었다. 고지없이 감시설비를 설치하는 비율은 20~30%에 달했고, 회사 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존재한다’는 답변은 40%에 불과했다. 사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 및 부당한 노동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 범위, 기능 등에 대해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

22. DNA 수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이나 주거권 등 인권 활동에 참여한 시민

76) 한국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그 절차와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식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77) Concluding Observations issued by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C/JPN/CO/7-8) and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C/KOR/CO/3-5), among many others, call for state parties to revise the 2015 agreement to provide full redress to victims that ensures their rights to truth, reparation and assurances of non-repetition. For a list of UN human rights bodies’ recommendations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ee: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Japan / Alternative Report o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ppendix No. 1. Compilation of Recommendations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May 2014,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JPN/INT_CCPR_CSS_JPN_17435_E.pdf

78)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Public Workers Solidarity Foundation (2021),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2021. <https://act.jinbo.net/wp/44827/>

들 또한 DNA 채취 대상이 되어왔다.⁷⁹⁾ 2018년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해 불복하는 등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⁸⁰⁾ 결정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험적으로 수집된 자신의 DNA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 및 기각되었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DNA 채취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재고하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23. 인공지능 기술과 기본권 보장

사회 각 영역에 AI 제품과 서비스가 활용 및 도입되고 있다. 특히 교육, 신용평가, 사회복지수급자 선정, 민간과 공공기관의 채용, 범죄예측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도 AI가 도입되고 있으며,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정청이 AI를 활용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행정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기관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집하고 보유해온 대량의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추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⁸¹⁾ 그러나 AI에 대한 검증, 설명가능성과 운영의 안정성 평가, 프라이버시 및 인권에 대한 영향 평가,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적법절차 마련 등 인권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고위험 영역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AI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의 AI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

24. 주민등록제도 개선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제한적 사용’이라는 1차 UPR의 권고⁸²⁾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예외 법령이 1천 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수사 편의를 위하여 민간 기업인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의무화하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79) 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https://act.jinbo.net/wp/7631/>

80)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6Hun-Ma344, 2017Hun-Ma630 decided Aug 30, 2018.

81) S. Korean government provided 170M facial images obtained in immigration process to private AI developers, HANKYOREH, Oct 21,2021,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16107.html

South Korea Is Giving Millions of Photos to Facial Recognition Researchers, Nov 16, 2021

<https://www.vice.com/en/article/xgdxqd/south-korea-is-selling-millions-of-photos-to-facial-recognition-researchers>

8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29 May 2008, A./HRC/8/40, p.15

해시함수를 이용해 변환하되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추가해 생성한 연계정보(CI)가 온·오프라인이나 서로 다른 서비스 사이의 연계를 위한 ‘동일인 인증’ 수단을 넘어서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본인식별정보로 쓰이고 있고, 수사대상자 식별 및 수사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한번 부여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그 생성과 사용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⁸³⁾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민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법률적 근거도 없고 온라인 상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CI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25. 통신의 비밀 보장

2018년 기무사의 단과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의 불법 감청이나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감청과 통신수사에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0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확인한 패킷감청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장치도 두지 않았고, 감청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자료를 열람하고 그 집행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는 장치도 두지 않는 등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로 초동 수사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통신자료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연관성을 가짐에도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확보가 가능하여 한해 5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후 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⁸⁴⁾ 이에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입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정부는 감청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보충성 요건 등을 부가하도록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제공의 요건도 강화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가입자 정보를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폐지해야 한다.

83)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범용식별정보로 쓰이고 오남용에 대해 통제장치도 없는 연계정보에 대해 2021년 9월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연계정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5,121,974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1207&searchOpt=ALL&searchTxt=%ED%86%B5%EC%8B%A0%EC%9E%90%EB%A3%8C>.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500명의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F.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26.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⁸⁵⁾ 2022년 5월까지의 청와대 내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었기에, 위 조항이 대통령의 주거공간인 관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집회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22. 5. 10.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용산동에, 관저는 서울 한남동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위치하게 되었다.⁸⁶⁾ 그럼에도 경찰은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2022. 5. 14.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는 성소수자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범문언상 분리된 공간이고, 집무실 앞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⁸⁷⁾ 그럼에도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다면서도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지통고를 하였다.⁸⁸⁾ 이후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은 다소 태도를 바꾸었지만 여전히 500인 이하의 소규모의 경우에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평화적 집회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폐지하는 등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명예훼손, 모욕 형사처벌 제도

한국 형법의 명예훼손죄⁸⁹⁾와 모욕죄⁹⁰⁾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이나 감정

85)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1 No person shall hold any outdoor assembly or stage any demonstration anywhere within a 100-meter radius from the boundary of the following office buildings or residences:

3. The Presidential residence and the official residences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86) Introduction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Yongsan

<https://eng.president.go.kr/sub/yongsan.php>

87) The Hankyoreh, S. Korean court gives anti-discrimination march OK to pass in front of Yoon's office, 12 May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42634.html

88) The Korea Times, Police to continue banning rallies near presidential office, 13 May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2/05/113_329092.html

89)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0)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욕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유형(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표현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도는 공인이나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그들에 대한 비판, 비난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에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미투 운동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폭로나 내부 고발 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고소, 고발 건수는 연간 약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⁹¹⁾ 지난 3차 UPR 권고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 법제를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132.107.108.),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을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몰아 넣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온라인 정보 차단 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누군가가 온라인상의 게시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단 요청을 하면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²⁾ 본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추정되어 보호받아야 할 온라인상 표현물들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 제도에 따라 연간 약 450,00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⁹³⁾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글들을 대량으로 차단 요청하여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⁹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신심의’ 제도도 있다.⁹⁵⁾ 인터넷 정보에 대한 행정검열로 기능하고

91) 데일리중앙,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 고소, 고발”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13>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93)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7)

94) 이재진, 이정기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2012, 51-84면.

9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있는 본 제도로 연간 약 20만건이 넘는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⁹⁶⁾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와,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사상 건전성 검열이나 정치적 여론 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성착취물과 같이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 외에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할 정보를 사법기관의 불법성 판단 전 누군가의 주장이나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는 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표현의 자유가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게재자의 복원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은 독립 기구로 이양하고, 불법성이 중대·명백하고 긴급성이 있는 정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시정요구를 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29.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공무원 및 교사는 일반 시민과 달리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 및 정당가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및 교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 직원의 정치중립의무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불편 부당을 위한 것이지만,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정부는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⁹⁷⁾

30. 선거기간 동안의 표현의 자유

선거기간 오프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 등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개인 및 시민단체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과 기소를 당했고,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일부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이어, 2021년 선거시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권자의 온라인 게시물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만 있으면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6)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http://transparency.or.kr/notice/2585>

97) ILO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는 2019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들은 보장 받아야하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했고,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약이 특정한 직업의 본질적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건으로 고려되려면 협소한 직업의 범위에만 적용되어야하고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 2019년 보고서 405~406쪽.

언제든지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심지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선에서 총 86,539건, 2020년 총선에서 총 53,902건⁹⁸⁾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했다. 정부는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뿐 아니라 제110조,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축소(제108조 개정)해야한다.

31. 양심적 병역거부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대체복무제도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첫째,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은 일반적인 군복무 18개월의 두 배인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⁹⁹⁾,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은 대체복무제를 차별적이고 징

98) 미디어오늘, '선관위가 대선 때 지운 게시글 8만건 역대 최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89> (게시일 2022.4.20., 검색일 2022.5.20.)

99)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Austria, 3 December 2015, CCPR/C/AUT/CO/5, paras 33-34: "33.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length of the civilian alternative service to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s longer than military service and may be punitively long if not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grounds (arts. 18 and 26). 34. The State party is encouraged to ensure that the length of service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required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s not punitive in natur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o the Russian Federation, 2003, CCPR/CO/79/RUS, para 17: "17. While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troduction of the possibilit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substitute civilian service for military service, it remains concerned that th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ct, which will take effect on 1 January 2004, appears to be punitive in nature by prescribing civil service of a length 1.7 times that of normal military service. Furthermore, the law does not appear to guarantee that the tasks to be performed by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ompatible with their convictions. The State party should reduce the length of civilian servic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and ensure that its terms are compatible with articles 18 and 26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GREECE, 2005, CCPR/CO/83/GRC, para 15 : "1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s much longer than military service, and that the assessment of applications for such service is solely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Defence (art. 18).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the length of service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does not have a punitive character, and should consider placing the assessment of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under the control of civilian authorities."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Estonia, 15 April 2003, CCPR/CO/77/EST, para 15: "1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uration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may be up to twice as long as the duration of regular military service.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can opt for alternative service, the duration of which is without punitive effect (articles 18 and 26 of the Covenant)"

Communication N° 666/1995, Foin v. France CCPR/C/67/D/666/1995 : "10.3. In the present

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군 입영 전과 전역 후 예비군 훈련 거부만 인정하고 현역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군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¹⁰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대체역 위원회가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속해있는데 이 또한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대체복무 성격을 규정한 여러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¹⁰¹⁾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1.5배 이하로 줄이고,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같은 군의 관할 지역 밖 민간 영역에 두어야 한다.

3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의 수는 2013년 197명, 2015년 73명, 2017년 27명, 2019년 15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으나 2021년 41명으로 57.7% 증가하였다.¹⁰²⁾ 이는 2024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대공 수사권이 이관되는 시점을 앞두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동수사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가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되는 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년간, 북한과 안면인식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와 ‘주체사상’ 관련 도서 작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또,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출판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국회에는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33.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에게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주요 활동사항과 여행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case, however, the reasons forwarded by the State party do not refer to such criteria or refer to criteria in general terms without specific reference to the author’s case, and are rather based on the argument that doubling the length of service was the only way to test the sincerity of an individual’s convictions. In the Committee’s view, such an argumen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nvolved in the present case was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Analytica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7 : “64. Any longer duration in comparison to military service is permissible only if the additional time for alternative service is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100)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7호, E/CN.4/RES/1998/7 :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2001년, 결의1518,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행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이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10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1년, 정민규 외 99인 대 대한민국, 개인청원 1642-1741/200 :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102)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index.go.kr)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가족,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한 단체,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하는 것¹⁰³⁾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이 조장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¹⁰⁴⁾에 대한 침해이다. 또, 형을 마친 사람에 대해 재범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근거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처음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에 대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 정부는 인권침해 제도인 ‘보안관찰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G.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34.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한 최소노동기준에 관한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는 법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1조 제2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근로조건 명시 의무, 휴게시간·주휴일 부여 등 일부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해고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근로시간 등 핵심 조항들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체 노동자 17.8%¹⁰⁵⁾에 해당하는 3,684,000명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체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체의 61.86%¹⁰⁶⁾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60%가 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다른 노동관계법이나 노동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조항은 사업장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2022년 3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체 114곳을 감독한 결과, 52개 사업장이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발되었다.¹⁰⁷⁾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노동기준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¹⁰⁸⁾

35.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ILO 협약 98

103) 보안관찰법 제14조(결정) 1항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104) 대한민국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5) 5인 미만 사업체 광역도시별 실태분석, 민주노동연구원, 2022

106)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2021

10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108)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을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호를 2021년 비준하여 적용중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여러 조항이 협약과 충돌하고 있고 노동기본권 행사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를 규정하는 법 동법 2조는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¹⁰⁹⁾에 따르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배제한다. 대표적으로 ‘종속 계약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으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배제한다. ‘사용자’ 역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 기업의 사용자가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없다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부는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ILO 87호 98호의 원칙에 맞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36. 좋은 일자리

지난 5년간 고용의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2021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099만 2천명 가운데 정규직이 1292만 7천명(61.6%), 비정규직이 806만6천명(38.4%)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비 정규직은 9만4천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64만 명이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정규직 비중은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2017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서는 장기입시직, 사내하청 등이 정규직으로 오분류되고 특수고용 노동자 다수가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비중은 훨씬 높을 것이다. 이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단기 공공일자리 위주로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5년 일자리 로드맵>에서 밝힌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확립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37.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¹¹⁰⁾에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악법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제9조의2),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한 목적과 달리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제14조 8호). 뿐만 아니라 2022년 1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¹¹¹⁾이 제정되어, 비공개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더 넓혔고(제11조 7항), 취득 목적과 달리 공개하면 처벌하는 수위를 더욱 높였다(제15조 8호, 제50조 4항).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노동안전보건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아 오래 고통받아왔다.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직업병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

10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https://url.kr/j21qfg>

1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https://url.kr/i12p59>

개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¹¹²⁾ 다행히, 2018년 2월 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삼성전자의 일부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삼성은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하면서 영업비밀 대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삼성이 제기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주장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반영되었고, 시민사회와 언론은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효과로 직업병 피해자들은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작업환경보고서를 받게 되었고,¹¹³⁾ 직업병 관정에서 중요한 자료인 역학조사보고서도 곳곳이 가려진채 받아보고 있다.¹¹⁴⁾ 삼성반도체 공장의 위험을 우리사회에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은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산업보호기술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38. 기업과 인권

한국 정부는 제3차 NAP(2018-2022)에 기업과 인권 부분을 별도로 두었지만 이 내용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심의 후 내린 구체적인 권고 내용¹¹⁵⁾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한국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ESG 지표를 만들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권고하고 있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인권실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이 없어 위 제도는 사실상 강제력 및 실효성이 없다. 그나마 2021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국가인권정책기본법에는 기업과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정책기본법 마련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ODA)와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부터 시작해 한국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1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국내연락사무소(한국NCP)가 설립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진정이 중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되고 있다. 심지어 2020년, 미얀마 군부와 협력한 6개 한국기업에 대해 진정했던 건 역시 1차 평가에서 각하되어, 해당 한국기업들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NCP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설립되어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 민간위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독립 전문가 기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2022년

11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on i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56

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33300004?input=1179m>

114)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5946_34936.html

115)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기업 및 한국 기업의 공급망의 인권 실천 및 점검 시행을 법적 의무로 수립할 것, 2) 한국기업들이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원고, 보조금 등을 기업의 사회권 준수 여부와 연계할 것, 4)NCP(National Contact Point)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

6월 현재, 이 민간위원 4인이 노동 및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위원회의 선출 및 중재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을 증진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노동 및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H.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39.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를 폐지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3차 UPR에서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이행' 권고를 수용한 바 있으나,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인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51만 6천명으로, 총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률은 3%에 불과하다.¹¹⁶⁾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즉각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40. 건강보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 80%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⁷⁾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은 맞는 방향이었으나 또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해결하지 못했고, 계획 대비 예산도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합진료금지, 지불제도개편,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고지원의 한시적 부칙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비율을 20% 이상 증액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41. 공공병원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4개로 OECD 평균 4.4개보다 약 3배 많지만 공공병상은 9.7%로 OECD 평균 71.6%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¹¹⁸⁾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지난 2년간 확진 환자의 80%를 전체 병상의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도맡아 치료해왔다. 이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 대기 중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면서 기존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흡연, HIV 감염인, 이주민 등 수

116) 의료급여 수급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6

117) 건강보험 보장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11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75087

많은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쫓겨났다. 의료공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 약 30개 지역에 2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충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42. 노인돌봄 및 노인학대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된다.¹¹⁹⁾ 정부는 3차 UPR을 통해 노인 권리 보장과 생활 조건 개선 노력 권고를 수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중 공공시설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고 대부분 민간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자 처우, 낮은 서비스질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으나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삭제되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2020년 전년 대비 약 19.3% 증가했으나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과 학대신고건수당 노인보호예산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⁰⁾ 정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인구수 및 노인학대발생 건수의 증가, 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증가 정도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43. 노인빈곤과 공적연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국가 평균 51.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¹²¹⁾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라 현재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적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44. 상병수당

한국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소득상실의 위협으로 인해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의료 비용, 일자리 상실에 따른 실업 급여, 공공부조 지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

119)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253

120) 참여연대, '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 2022년 예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34945>

121)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https://www.oecd.org/publicat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141900530?input=1195m>

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병수당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에 불과한 데다 보장수준이나 보장기간도 몹시 미흡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직전 소득 60% 이상을 보장 하는데 반해 우리는 최저시급의 60%로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보장 기간 역시 매우 짧다. ILO는 ‘상병급여협약(1969)’에서 최소 1년(52주) 이상 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0일에서 120일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실한 시범사업이 아닌 누구나 아프면 간편히 치료를 받고,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충분히 담보한 상병수당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

45. 주거권

2015년 이후 가계대출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임대료 상승률이 13.1%를 기록했다.¹²²⁾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인하하려 한다.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5%¹²³⁾ 수준인 가운데, 230만 주거빈곤가구¹²⁴⁾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2018년 11월 종로에서 7명, 2022년 4월 영등포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고시원 화재가 잇따랐다. 2018년 서울 아현동 재건축 지역에서 강제퇴거로 청년이 사망했으나,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만을 추진 중이다. 2020년 이주여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주거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포괄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매년 12만 명의 청소년이 탈가정하여 비적정주거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정책은 없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도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적정 거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해소를 포함한 홈리스 종식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도시 정비사업에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 강제퇴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및 청소년을 주거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I. 소수자

46. 장애인

한국의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위한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 탓에 장애인들은 여전히 실질적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¹²⁵⁾ 시설 거주 장애인은 2014년 31,406명에서 2020년 29,086명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¹²⁶⁾ 특히 지

122) 한국도시연구소, 2021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2022. 3.

1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 분양전환임대주택(5·10년)과 전세임대주택은 제외함(국토부 통계누리), 전체 주택수는 21,673.5천호임(통계청, 新주택보급률)

124)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25)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CRPD/C/KOR/CO/1), 2014

1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역사회 거주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은 발달장애인으로, 한국 정부는 2021년에 ‘발달장애인지원법’¹²⁷⁾ 을 제정했으나,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너무 적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드러낸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계획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나, 로드맵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¹²⁸⁾ 그마저도 2023년 탈시설 예산은 21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6,224억 원으로 탈시설 예산의 약 300배에 달한다.¹²⁹⁾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유의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에 그친다.¹³⁰⁾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은 이동에 있어 비장애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대중 캠페인을 해왔으나,¹³¹⁾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요구를 묵살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활동지원, 가족 보호, 교육, 노동, 문화 및 여가생활 등), 이동권,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법과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47. 장애인 노동

2018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작업능력평가’ 결과, 한국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9,413명이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0년 기준 37만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의 20%(179만원), 통계청 발표 전체 국민 평균임금의 11%(32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¹³²⁾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의료 및 재활 접근을 강조하는 ‘장애인보호 작업장’¹³³⁾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 619개 직업재활시설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2,702명에 불과하

127)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21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3998&lang=ENG

128) Korean Disability Forum, The first Deinstitutionalisation Roadmap by the ROK government turned out to be a deceptive ‘institution transform plan’, August 6, 2021(http://thekdf.org/human_rights/1411)

129) Beminor, May 12, 2022(<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5>)

13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cessible Bus Operation Status, 2020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5250&hDivEng=&month_yn=N

131) Korea Times, 'We were never really welcome anywhere': People with disability fighting for rights in Korea, April 5,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2/04/718_326758.html

132) 2021년 윤준병 환노위 국정감사 제출 자료. 웰페어 뉴스/<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9057>

133)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재활이라는 명분으로 비장애인과 분리고용된 일터로 최저임금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며, 최저임금 미만인 장애인노동자는 7,371명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어긋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및 보호작업장에 대한 대안적 일자리로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권리기반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가장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임금노동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나, 이제 이들은 UN CRPD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활동, 장애인 권리 교육, 장애 권리 옹호 활동이라는 세 가지 주요 업무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중증장애인 본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혁신적인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일자리에겐 장애인만 채용될 수 있지만, 이들은 통합된 업무 환경에서 근로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노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전국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 인력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무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일할 수 있는 의료적 적합성’ 등을 폐지하고, 중증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보호작업장’을 폐지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일자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과 지원인력에 대한 평등한 노동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정부는 자선에 가까운 일자리 또는 프로그램을 넘어 중증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8. 이주노동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¹³⁴⁾ 이에 임금 미지급, 육설과 학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부상 등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¹³⁵⁾ 현행법 상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회사의 폐업 등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는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었다. 2020년에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동사하기도 했다.¹³⁶⁾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불법 임시건물이 여전히 기숙사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

13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35)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 April 2015, A/HRC/29/46/Add.1, paras. 69

136)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12/281_301395.html

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불법 임시가건물과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 월급의 최대 20%를 숙식비로 과도하게 공제하는 등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정부는 불법 임시가건물 기숙사 사용을 금지하고,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하여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해야 한다.

49. 이주구금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본국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머무른다. 외국인 보호소에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단기¹³⁷⁾로 머무르다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온 난민신청자들은 본국 송환이 불가능해 장기간 구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20년 법무부 공개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 장기구금된 자 중 46%가 난민신청자이다.¹³⁸⁾ 외국인에게 1인당 1.84 평방미터의 공간이 주어지고, 면회가 엄격하게 관리되며, 주 5회 하루 30분 운동시간만이 주어지고,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2년 5월 기준 195명의 외국인을 단 2명의 의사가 관리하는 등¹³⁹⁾ 이곳은 사실상 구금시설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보호결정부터 보호소 내의 생활, 출국 과정까지 외부 독립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다. 2021년 9월, 보호소 직원들이 장기간 (총 11개월) 구금되어 있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새우껍기’고문을 한 CCTV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¹⁴⁰⁾ 이후 법무부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사지를 결박하는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예고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 외국인을 9개월이 넘게 구금하고, 여전히 아동을 구금하고 있는 등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는 운영 역시 문제된다. 정부는 외국인보호소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아동에 대한 구금을 금지하며, HIV감염인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구금)’를 자제해야 한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외국인보호규칙 법개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50. 인신매매

대한민국은 2013년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을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 2015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도 형법의 인신매매 정의는 협소해서 팔레르모 의정서 상으로는 ‘인신

137) 1인당 평균보호기간 2021년 6. 30. 기준 33일 가량

138)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보고서 , p8,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139) 화성외국인보호소 제공 ‘2022. 5. 업무현황’ 자료

140)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urged to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15th Nov. 2015, The Koreatimes,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12/281_318891.html

(사건 설명) 피해자는 구금된 첫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일명 ‘새우껍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보호소 공무원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을 이용하여 발목을 포박하였다. 그 뒤 손목과 발목의 포박을 다시 포승으로 연결하여 바닥에 눌렀다. 등 뒤로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자세로 있어야 했으며, 머리에는 헬멧까지 씌워졌다. 그 과정에서 보호소 직원들은 신청인의 몸 위로 올라타 목,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문은 한밤중에도 이루어졌고, 몇 시간씩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박스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불법적인 도구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하기도 했다. CCTV가 공개된 후 법무부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무력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21진정0451000)

매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 커녕 기소조차 되지 못해 왔다.¹⁴¹⁾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2021. 4.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신매매방지법”¹⁴²⁾)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해 법 제정 단계부터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법 제정 이후에도 가해자 처벌 시에는 여전히 기존의 형법이 적용되어 인신매매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공무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어, 예술홍행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여성 노동자 등 외국인 피해자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국 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가 강제출국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한국 원양어선 및 20톤 이상의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들은 높은 송출비용¹⁴³⁾과 이탈보증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2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낮고 차별적인 체불임금(원양어선은 53만원¹⁴⁴⁾, 연근해어선은 172만원¹⁴⁵⁾), 을 받으면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여권 압수, 사업장 변경의 제한, 체불임금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¹⁴⁶⁾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신매매방지법을 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식별지표를 개발, 고시하여 수사기관과 출입국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식별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주어선원 송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고액의 송출 수수료를 제한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이주어선원에 대한 노동 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선원들의 휴식시간과 합리적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51. 난민과 난민신청자

한국은 난민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난민인정률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낮다.¹⁴⁷⁾¹⁴⁸⁾ 난민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통번역을 제공받지 못하며, 난민심사 단계에서는 난민법상 규정된 법률조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난민심사와 심사기간 등

141) 자료집 “인신매매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중 국회 발의된 법률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 법안의 소개, 김종철, 제34면

“...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조항이) 2013년에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형법 제289조가 적용된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하다.”

142) 2020.12. 이수진(동작 을) 의원이 대표발의

143) 2021.9.30. 국가인권위원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결정문 중 제13,14면 참조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282&menuid=001004002001>

144) 2020.12.7.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물 “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6527&boardKey=10&menuKey=376¤tPageNo=6>

145) 2021.9.30. 국가인권위원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결정문 중 제13,14면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282&menuid=001004002001>

146) 2020.6.9.자 KBS 뉴스, <“매일 20시간 일하고 60만원 받아요” ... 다시 불거진 이주선원 실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6333>

147)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총 32명(가족결합을 제외하면 7명)이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24명, 소송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는 16명이다.

148) 2017년 1.5%, 2018년 3%, 2019년 0.4%, 2020년 0.4%, 2021년 1%

안의 체류 및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대외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난민심사관의 수가 부족하며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 그리고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난민신청자는 장시간 불안정한 지위로 대기해야 하는데,¹⁴⁹⁾ 이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으나 2021년에는 난민신청자 중 단 1.8%만이 평균 3.7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재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실심사를 지시(2014년 11월~2017년 4월)하고, 이 과정의 난민심사에서 난민신청자가 하지 않은 진술을 난민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난민심사 조작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⁵⁰⁾ **정부는 난민 수용률을 높이고, 공정하고,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난민심사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52.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라는 이중적 약자로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여부에 따라 체류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가족 유지 여부, 한국 국적 자녀 양육 여부, 이혼에서의 배우자 책임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혼·사별로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귀화 과정이 더 어렵다.¹⁵¹⁾ **정부는 혼인상태, 한국국적 자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귀화에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이며, 이의 규제를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 위 법률은 부정한 방법이나 속임수로 대상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나 그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나 처벌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결혼 남성 지원 제도’가 사실상의 매매혼을 지원하는 반인권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폐지해야 한다.**

53. 이주민 건강권

2019년 7월 정부는 국내 체류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외국인건강보험제도를 개정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이주민의 지역건강보험 의무

149) 2021년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첫 난민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을 대기해야 했다.

150) 이 사건은 2018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가 드러났고, 2019년 정부차원의 감찰과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를 확인하였고, 2021년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22348.html

151)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 체류권 실태조사에서 이혼/별거 등 혼인단절 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남편 및 남편가족이 체류연장을 방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19.6%),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서류 마련에 어려움(17.4%)을 겪고, 체류연장 자격이 불가하는 등(10.9%), 이혼 및 별거과정에서 체류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6.7.)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

가입을 실시하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여 과도한 보험료 부담, 체납 시 체류자격 불이익, 세대 합가 인정 제한 등 차별이 심각하다.¹⁵³⁾ 건강보험료 미납시 체류자격이 연장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빚까지 내어 체류 연장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¹⁵⁴⁾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민들은 단기 출국유예가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으나 이를 모른 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기관 이용 후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제한과 보험료환수조치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즉, 개정된 건강보험으로 이주민의 건강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차별이 심화되었다.¹⁵⁵⁾ 기존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영유아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의료만을 담당하면서 이주민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었다.¹⁵⁶⁾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출국 비행편 부재 또는 중단으로 외국인보호소가 과밀화되어 개인위생 및 방역 문제와 함께 출국 지연으로 야기된 정신건강 악화 등도 중요한 건강위기로 대두되었다. 특별히 최근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자살사태¹⁵⁷⁾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생활 조건 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예방과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정부는 국제협약 권고¹⁵⁸⁾에 따라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적용 차별을 개선하고, 유

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153)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 제5조(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9조(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 i. 개정 후 가입자격 기준이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바뀌면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의료공백이 확대되었다. ii. 세대합가 인정범위가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부모나 성년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개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iii. 보험료 산정기준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되어 내국인 평균보험료 미만시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로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154) 보호받지 못하는 몸-혐오정치가 내세운 '이주민 무임승차론', 경향신문, 2022.04.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010600015>

"차라리 추방시켜주세요" 이주노동자의 눈물, sbs 뉴스, 2021.11.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3749

155)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156) 코로나19로 끊긴 '미등록 이주민 아동' 필수 예방접종 재개, 한겨레신문, 2022.01.20.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8196.html>

157) 윤미향 의원실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2021.10.04.) 이주노동자 자살자 증가...인권침해 개선해야

158) i. 제3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각 국의 권고132, 125,126, 127.(이집트, 콩고, 이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을 비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받도록 보장할 것과 특히 아동이 충분한 생활비, 주거,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갖도록 보장할 것 ii.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17, 18, 19 차 통합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 권고 32.(a)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위원회는 또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모든 이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b)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iii.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4. 7.>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위기 속에서 이주민들은 낙인과 차별에 특히 취약한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이주민들이 지위와 관계없이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보건시설 및 물품과 서비스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J. 여성과 아동

54. 아동권리 이행 일반

한국에서 아동권리교육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운영에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에는 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아동권리의 특정 이슈만을 다룬다. 또한, 한국은 아동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예산편성에 필요한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아동권리교육이 제공되도록 관련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통계를 연령,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집해야 해야 한다.

55. 아동친화적 사법제도

한국의 아동사법 제도는 아동친화적이지 않다. 현재 사법영역에서 아동의 의견청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법정대리 없이는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¹⁵⁹⁾ 법무부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흉포화 대응”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 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년법에는 ‘우범소년’ 규정이 있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¹⁶⁰⁾ 한편, 2021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녹화 영상만으로 법정 진술을 대신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아동의 2차피해 및 피청취권 침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아동의 의견청취권과 재판청구권을 확대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형사책임 최저연령 하향 시도를 중단해 아동친화적 사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56. 보편적 출생등록

한국의 출생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에 출생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¹⁶¹⁾ 2016년 5월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대책을 포함한 입법적, 정책적,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를 함.

159) 민사소송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제1항 등

160)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

16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수 있도록 보완되었지만,¹⁶²⁾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그와 함께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익명출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¹⁶³⁾ 또한, 현행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들은 출생등록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신고만이 가능한데, 박해의 주체인 출신국 공관에 접근이 어려운 난민 아동 등은 출생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인종, 법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공적으로 등록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57. 입양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낸 나라임에도,¹⁶⁴⁾ 국제입양을 민간 기관에 의존해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5,6차 최종권고에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¹⁶⁵⁾ 국내입양의 경우, 친부모-양부모 간의 협의에 의한 민간입양이 상당수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며, 입양된 아동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부재는 민간입양된 아동에 대한 학대, 과잉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는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을 비준하고, 그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입양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의 입양 절차와 업무를 국가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

58. 아동보호체계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6-2020) 재학대율은 약 10%,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명에 달한다.¹⁶⁶⁾ 2021년 1월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어 가정 내 체벌 금지가 법제화 되었고,¹⁶⁷⁾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으나, 학대 신고가 2회만 접수되더라도 아동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는 원가정 보호와 지원에 대한 아동권리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배치된 경우 관할부처가 달라져 아동보호체계와 단절되는 문제도 있다. 가정의 학대와 방임 등으로 ‘탈가정’한 청소년을 위한 주거권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서 시설 수용을 거부하는 홈리스 청소년의 상당수는 성착취,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위기를 중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¹⁶⁸⁾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정기적 관리 감독, 재발 방

16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1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114860, 제안일자 2022.03.0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N2C0K3K0U4T1R5P3T1I4K9N2C4H8

164) 1953년부터 2020년까지 16만 8,096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는 266명으로 세계 3위의 아동송출국이다.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RC(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Monthly Review No.257 December 2021)

165) 5,6차 국가보고서 최종권고 CRC 33(f)

166)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167) 구 민법 제915조

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 또는 지원이 포함된 대안적 주거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¹⁶⁹⁾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소년의 홈리스 상태를 인식하여 주거우선원칙에 따라 청소년 주거권 정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을 중심에 둔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9.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2호에 의해 한국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다. 이 때 ‘선거운동’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청소년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¹⁷⁰⁾ 뿐만 아니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으며, 만 16세부터 18세 미성년자의 경우 정당 가입을 희망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선거권 및 정당 가입 등의 연령 제한이 하향되었음에도,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은 교육부, 학교 관리자에 의해 질서유지와 학습권, 교육권 보장을 명목으로 대부분 제한되고 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기 전에 존재하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학칙도 상당수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선거운동과 정당에서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학교에 여전히 존재하는 학생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60.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직접체벌은 금지되었으나 고통스러운 동작을 취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체벌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학칙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용의복장규제, 두발규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¹⁷¹⁾ 다

168) 실제로 여성가족부 추산 연 27만명(2018년 기준)의 ‘탈가정 청소년’ 중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약 3만명에 불과하다

(<https://korea.stripes.com/community-news/invisibility-homeless-youth>). 또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쉼터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했고, 여성가족부의 쉼터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여성/남성 성별로 구분된 쉼터에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입소하기가 어렵다(<https://www.bbc.com/korean/news-57620792>).

169)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라, 시설보호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배치하는 조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아동보호조치의 66%가 시설보호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170) 한겨레, “법의 이름으로 비웃지 마세요 … 만14살,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2020년 11월 8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8976.html>

17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2022년 3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3개 시도의 38곳 학교에서 인권 침해 사례 53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그 외 전자기기를 지정구역 외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압수하는 학칙이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그 외에 학업성적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또는 학생의 미성숙을 근거로 하여 교육을 위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학칙 등이 많이

수 존재한다.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획일적 제복 착용을 강제하며, 계절과 기간에 따른 옷차림과 외투 착용 등을 규율한다.¹⁷²⁾ 설령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있더라도, 현행법에서는 학칙을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규칙이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해결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61.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은 다했다” 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여성인권 그룹 및 개인들이 이 공약을 철회하라는 요구¹⁷³⁾ 를 강하게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¹⁷⁴⁾ 한편, 여성들이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일상에서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증명된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며, 성별에 따라 다른 법과 정책의 영향 분석 등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현재 턱없이 적은 예산(정부예산 중 0.24%)¹⁷⁵⁾ 과 인력(277명, 2021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베이징행동강령(1995) 및 여성지위위원회 제65차 합의결론(2021)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 및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을 포함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2. 성별임금격차 해소

한국사회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원인 중 66.5%는 동일한 일을 해도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일의 가치를 적게 평가받는, 즉,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¹⁷⁶⁾ 윤석열 대통령은 ‘성별근로공

존재하나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개선이 크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2) 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지역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특정 머리 모양이나 집게핀, 고데기 사용마저 금지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173) 다양한 지역, 국가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은 여성인권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강한 우려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 및 청원서 등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1)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연대성명서(2022.4.3,

<http://women21.or.kr/statement/19468>), 2) 643개 한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성명서(2022.3.25, <http://women21.or.kr/statement/19436>), 3) 2022년 5월 12일 기준 10,791명이 한국시민들이 연명한

청원서(http://women21.or.kr/index.php?mid=statement&page=3&document_srl=19361) 등이 있다.

174) 여성가족부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는 김현숙 신임 장관의 발언은 대중의 큰 비판을 받았다.

175) BBC, “Why misogyny is at the heart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s”, Mar. 9, 2022, <https://www.bbc.com/news/world-asia-60643446>

176) 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칼럼(20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제' 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어 한계적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종, 직급, 승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성별임금공시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입을 실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63. 채용 성차별 근절

채용 성차별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다. 기업이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하향 조정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던져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¹⁷⁷⁾ 최근 관련 법령¹⁷⁸⁾ 이 개정되어 고용 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가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주에게 별첨만 부과됐지만, 해당 개정으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이는 차별이 일어난 후에 개인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 요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방책이 아닌 사후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4.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최근 한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성폭력이 만연하다. 온라인성착취 플랫폼 운영자는 사이버공간에서 조직적 성착취 범죄를 통해 거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이 범죄의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에 조직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여, 온라인 성착취 구조 운영자¹⁷⁹⁾들은 처벌받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처분만을 받았다.¹⁸⁰⁾¹⁸¹⁾¹⁸²⁾¹⁸³⁾¹⁸⁴⁾ 정부는 조직적 사이버성폭력 범죄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articleId=178>

177) CNN, "South Korea's glass ceiling: the women struggling to get hired by companies that only want men", Feb, 2, 2019.

<https://edition.cnn.com/2019/01/31/asia/south-korea-hiring-discrimination-intl/index.html>

1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79) 대표적으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던 양진호(웹하드카르텔 의 핵심인물),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성착취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조주빈과 문형욱(텔레그램n번방 성착취사건의 핵심 운영자) 등이 적합한 죄목과 형량으로 처벌받지 않아 왔던 문제가 있다

180)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다루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행위를 다루는 법은 아니다.

181) 웹하드카르텔은 여성이 성착취물을 활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하여 헤비업로더, 판매자, 필터링 업체, 영상물삭제 업체 등의 다양한 구조가 촘촘히 얽힌 웹하드 운영시스템을 말한다. Korea JoongAng Daily, "Abusive executive who ran porn networks gets 7 years", May 28, 2020,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5/28/socialAffairs/Yang-Jinho-gapjil-%EC%96%91%EC%A7%84%ED%98%B8/20200528165200215.html>

182) The Korea Times, "Public anger growing over child porn site operator's annulment", Aug.5, 2020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4/251_293939.html

183) BBC, "Cho Ju-bin: 40 years jail for South Korean chatroom sex abuse group leader", Nov.26,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082072>

184) 이처럼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부재로 인하여 경찰은 양진호의 범죄혐의 가운데 웹하드

구조를 기획, 조직, 유도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 마련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사이버성폭력은 그 수법이 교묘히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미비하다. 피해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성적인 모욕을 동반한 사례, 사이버 스토킹, 단체채팅방 내에서의 언어성폭력, 나아가 피해경험자의 신상정보를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낙인 찍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피해경험자를 사칭하여 SNS 계정을 만드는 등의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의 관점으로 다루는 유일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죄)¹⁸⁵⁾ 이나 이 법이 다루고 있는 유형은 ‘피해경험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한정적이다. 가해자를 수사하고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의 관점에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피해를 성폭력으로 다루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65.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한국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보고 성매매여성의 피해회복 및 탈성매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면책조항이 있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매우 협소하게 받아들여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¹⁸⁶⁾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성매매 처벌법의 집행 과정에서 성매수자, 알선자보다 성매매 여성이 더 처벌받고 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자로 체포된 339명 중 남성은 63명인데 반해 여성은 254명 (불상 22명) 이었다.¹⁸⁷⁾ 정부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착취이자 폭력임을 확실히 하고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매매 알선 및 수요를 차단하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완전 비범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66. 미혼모의 권리

한국에서 비혼상태로 임신한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 주거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카르텔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유포죄와 저작권법 위반,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고, 양진호가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주도했다는 의미로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인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는 고작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성착취방의 핵심운영자들은 가장 높게는 징역 42년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핵심운영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키기 위한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85)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86) CEDAW/C/KOR/Q/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 국가에 성매매여성의 처벌금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제49차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거래에 관련된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18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

이로 인해 전체 미혼모의 80%가 산후우울감을 겪고 있다.¹⁸⁸⁾ 한국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지만 이후 현재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임신기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은 특히 미혼모에게 필요함에도 한국은 비혼임신과 출산에 대한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한국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아동의 신분등록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혼상태의 임신과 출산은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혼상태에서 태어난 아동, 특히 미혼부의 아동이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으며, 비혼상태의 공동체는 가족간의 부양을 전제로 한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배제되며, 한부모가족으로도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는 임신기 여성에게 낙태를 포함하여,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거, 의료지원 등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혼상태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하며, 의료, 사회복지, 주거지원 등의 사회지원체계가 비혼상태의 공동체를 포괄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K. 발전권

67. 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정부는 ‘개발 사업에서의 인권 기반 접근법’이라는 3차 UPR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권 기반 접근을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에서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취약계층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에서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상원조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환경 파괴, 비자발적 이주, 선주민 인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 기반 접근에 따른 사업 수행 체계 도입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유·무상 원조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편,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KOICA는 ‘세이프가드’에 따라 협력국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의제기나 고충, 세이프가드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협력국 정부가 무시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원조 기관에 직접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사·심의,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L. 기후위기

188) 변수정, 미혼모가족의 출산및양육특성과 정책과제 2019. p.113
<https://www.kihasa.re.kr/research/project/view?searchText=%EB%AF%B8%ED%98%BC%EB%AA%A8&page=1&seq=34930>

68. 기후위기와 인권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상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청소년, 농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¹⁸⁹⁾¹⁹⁰⁾ 한국 정부는 국내와 해외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부산 가덕도, 전북 새만금 등에 새로운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한국정부는 2021년에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수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11개 그룹사들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의 책임이 크다.¹⁹¹⁾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에 위협이 되는 핵발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과 신공항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89)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청소년기후행동은 2021년 10월과 2022년 2월에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법이 시민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Youth 4 Climate Action, Press Release, 16 Feb. 2022

<https://youth4climateaction.org/climate-litigation/?q=YToxOntzOjEyO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Jt9&bmode=view&idx=10566006&t=board>

Korea Climate Crisis Emergency Action Network, Press Release, 12 Oct. 2021
<http://climate-strike.kr/4022/>

190) 2020년 12월, 농민, 어민, 배달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의 주민,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가 파리협정이 제시하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후정책(감축과 적응)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서,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 받았다는 내용이다. Green Korea United, Press Release, 22 Dec. 2020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tion-climate-change/86044/>

19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6677.html>